

1995년 기준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

1998

통 계 청



## 머 리 말

광공업동태조사는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된 대표품목을 생산하는 표본사업체의 생산·출하·재고를 매월 조사하여 산업생산지수로 편제하는 조사입니다.

금년에 90년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산업구조를 보다 잘 반영하는 산업생산지수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준년도를 90년에서 95년으로 개편함에 따라 광공업동태조사 지침서도 5년만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조사에 관련된 지침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침서에 설명되어 있는 기본개념을 잘 이해함으로써 실제 조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상황에 대처하여 조사목적에 합당하도록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정된 지침서는 첫째,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였으며 둘째, 광공업동태조사 결과로 작성되는 산업생산지수의 편제내용을 수록하여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며, 모집단 통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침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기술방식, 표양식 등을 최대한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지침서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미처 수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조사직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동향과장 권 오 봉

# 목 차

I. 조사개요 .....	1
II. 조사표 작성요령 .....	4
1. 일반사항 작성요령 .....	4
2. 제품별 생산, 출하, 재고사항 .....	6
3. 조사표Ⅲ 작성요령 .....	15
4. 원재료 및 연료사용, 재고란 작성요령.....	17
5. 고용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	19
III. 조사표검토 및 입력 .....	22
1. 조사착오유형 .....	22
2. 중점검토사항 .....	24
3. 수시확인 점검사항 .....	24
4. 조사표 입력 .....	25
IV.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	25
V. 조사대상 사업체 관리요령 .....	28
VI. 산업생산지수의 개요 및 편제 .....	39
1. 산업생산지수의 의의 .....	39
2. 산업생산지수의 연혁 .....	41
3. 산업생산지수의 편제내용 .....	41
4.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	48
5.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	48
6. 특수분류별지수 및 재고율지수 .....	50
VII. 부 록 .....	55
1. 광공업동태 조사표 양식 .....	56
2. 사업체 관리 보고 양식 .....	62

# I. 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 광공업동태조사는 광공업사업체의 생산, 출하, 재고를 파악하여 월별 산업생산 관련 지수를 작성·공표하기 위한 통계조사임
- 광공업동태조사 결과 작성되는 산업생산지수는 국내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추계에도 이용되고 있음

## 2. 조사의 법적근거

- 통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한 지정통계임

## 3. 조사기간

- 조사 기준 일 : 매월 말일
- 조사대상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재고는 월말기준)
- 조사실시 기간 : 익월 1일부터 19일까지

## 4. 조사대상 및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에 속하는 사업체 중 광공업동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사하지 않음
    - 조사기간중 설립중에 있거나 신설공사 중인 사업체
    - 공공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특수수용시설내 작업장

## 5. 조사단위

○ 개개의 사업체 단위(공장, 작업장, 광산 등)로 조사

- 따라서 사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업의 본사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체별로 조사표를 작성해야함

※ 기업 및 사업체 구분방법

그룹	기업체	사업체 (조사단위)
H그룹	(주) 진솔	(주) 진솔 청주1공장 (주) 진솔 청주2공장 (주) 진솔 대전공장
	(주) 산하	(주) 산하 울산공장 (주) 산하 영등포공장
	영진철강(주)	영진철강(주)

## 6. 조사사항

가. 제품생산·출하·재고에 관한 사항

1) 조사표 I (품목번호 : 00100-46300, 69100-73500, 74400, 74600-80200)

- 지정품목별 생산량, 구입량(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
- 재투입량, 출하량(국내시판, 수출, 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 과부족 조정량, 월말재고량

2) 조사표 II (품목번호 : 46400-69000)

- 조사표 I 과 동일하나 생산, 내수, 수출, 재고는 수량과 금액을 모두 조사
- 단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과 과부족조정란이 없음

3) 조사표 III (품목번호 : 73600-74300, 74500)

- 지정품목별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완성품 인도량(톤수, 척수)

나. 원재료, 연료 사용 및 재고량

- 원재료 및 연료별 생산지(국산, 수입),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다. 고용 및 조업상황

- 고용사항
  - 월말 상용종사자수, 월중 입직자수 및 이직자수
- 조업사항
  - 월중 조업일수,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교대횟수

7.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방법과 자계식 방법 병행

8. 조사체계

- 전국품목
  - 산업동향과 : 집계, 지수편제 및 분석
  - 지방통계사무소 : 조사, 자료입력 및 전송
- 지역특성품목
  - 산업동향과 : 집계, 지수편제
  - 지방통계사무소 : 조사, 자료입력 및 전송, 분석

9. 집계 및 공표

- 전국자료
  - 산업활동동향(보도자료)
  - 산업생산통계월보
  - 산업생산연보
  - 한국통계월보
  - 한국통계연감
  -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시·도별 자료

- 각 시·도별 산업생산동향 보도자료(지방사무소)
- 산업생산통계월보
- 통계정보시스템(KOSIS)
- 한국통계월보
- 한국통계연감

## II. 조사표 작성요령

### 1. 일반사항 작성요령

#### 가. 연·월분 및 잠정·확정자료 구분

199□년 □□월분 1. 당월확정, 2. 당월잠정, 3. 전월확정

- '년'은 1자리, '월'은 2자리 숫자로 기입하고, 조사 자료가 당월 확정, 당월잠정, 전월확정인지 해당번호에 ○표시
- 전전월 자료가 잘못되어 정정 보고하는 경우는 별도 서식에 의거 매월 17일까지 조사표와 함께 산업동향과로 FAX 보고

#### 나. 사업체고유번호 □□□□□□□□

- 지정된 사업체고유번호(7단위)를 사용하며 변경지시가 없는 한 임의변경 불가

#### 다. 산업분류 □□□

- 조사품목의 소분류(3자리)를 부여
- 다만, 조사품목이 다양하여 2개 이상의 산업분류로 구분되는

경우는 동일 산업분류에 속하는 품목들의 출하액 합계가 가장 큰 산업분류를 기입

산업분류	품목번호	품목명	출하액 (백만원)
152	03700	시유	4,000
	04100	치즈	6,000
155	08200	과즙음료	7,000
	08300	혼합음료	1,500
	08400	두유	1,000

-품목별로는 '과즙음료'의 출하액이 가장 크지만

-산업별 합계는  
152 : 10,000백만원  
155 : 9,500백만원으로

-산업분류는 152가 됨

- 조사품목이 다양하여 2종류(조사표 I,Ⅱ,Ⅲ중) 이상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표별로 조사품목들의 연간출하액 크기를 비교하여 산업분류번호를 각각 기입
- 조사중인 사업체에서 신규 지정품목을 생산하여 신규 품목이 주종 품목이 되면 신품목에 해당되는 산업분류를 기입하고 산업동향과로 보고
- 전국지수 지정품목과 지역특성품목을 함께 생산할 경우에도 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라. 행정구역번호

- 한국행정구역분류상의 행정구역번호를 7자리를 기입
- 본사조사인 경우 반드시 사업체가 실제 소재하는 지역의 행정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에 유의

마. 조사구번호

- 지방사무소 조사담당자의 개인 ID번호를 기재

바. 사업체명

- 사업체의 공식명칭을 기입
- 하나의 회사가 여러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장명까지 정확히 기입

## 2. 제품별 생산, 출하, 재고사항

### 가. 조사대상품목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칭이 조사대상품목명과 다르더라도 지정품목개념에 포함되는 경우 조사함에 유의

### 나. 품목부호 및 품목명

- 『지정품목분류표』에 기재된 품목부호 및 품목명을 기입
- 품목부호 체계(5자리)
  - 처음 세자리는 조사대상품목 802개(지역특성품목 포함) 품목의 일련번호이며
  - 마지막 두자리는 품목 특성번호로서

마지막 두자리가 '00'이면 ... 전국지수 품목부호
마지막 두자리가 '9X(X=1,2,3.....8)'이면 물량세분 품목부호
마지막 두자리가 '09'이면 지역특성 품목부호

- 지수품목의 품목부호, 품목명은 기입하지 않고, 세분품목만 기입

1	0	1	9	1	순합성섬유직물
1	0	1	9	2	혼방합성섬유직물

### 다. 단위

-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를 경우 지정단위로 정확하게 환산 기입
- 조사표 I 대상품목중 금액조사 품목은 각 항목을 금액으로 조사
- 조사표 II 대상품목은
  - 지정수량 단위에 의한 물량조사와 함께 금액조사도 병행

- 지수편제 단위는 금액기준이지만, 물량 통계를 위하여 수량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물량조사도 병행함.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함(반올림해도 '0'이 되는 경우는 몇 개월간의 누계량을 반올림하여 '1'이 되는 달에 수량을 '1'로 조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생산량	0.4	0.4	0.4	0.2	1.1	0.3
누계량	0.4	0.8	1.2	1.4	2.5	2.8
조사표	0	1	0	0	2	0

### 라. 품목변동부호

- 품목에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음 부호에 따라 기입
  - 품목신규생산 ----- 1
  - 품목생산중단 ----- 2
  - 기보고해은 품목으로서 분류착오로 제외 ----- 3
  - 타지역에서 전입 ----- 4
  - 타지역으로 전출 ----- 5
  - 품목조사누락 ----- 6
  - 관할신규 ----- 7
  - 관할해소 ----- 8

### 마. 생산

- 생산은 자체생산, 위탁생산, 수탁생산으로 구분하여 조사
  - 이 중 자체생산과 위탁생산만 광공업동태조사의 생산으로 집계·처리되고 자체생산과 수탁생산은 제조업 능력조사의 생산으로 집계·처리됨

◇ 생산을 구분하는 이유 ◇

- 생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에서 이중 조사 방지
- 위탁업체를 생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탁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의 생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  
(지역지수, GRDP 산정시 중요)

-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재투입되고 있는 품목도 조사대상 품목인 경우 빠짐없이 조사해야 함

### 1) 자체생산

-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
- 사업체에서 자가소비(재투입)을 목적으로 생산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아 생산은 하지만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예 : OEM생산)
- 주문업체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것도 자체생산에 포함(비제조업체가 주문한 생산 포함)

### 2) 위탁생산

- 위탁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원재료를 제공하여 다른 업체에 주문 생산
- 따라서 조사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님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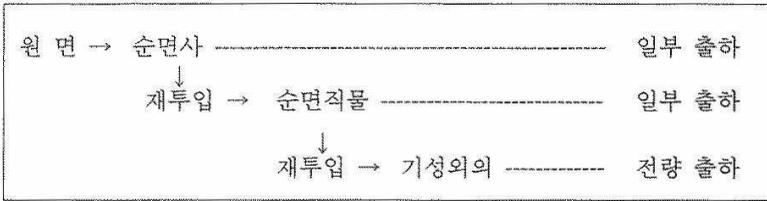
### 3) 수탁생산

- 위탁생산의 반대개념으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광공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이 경우 생산을 위탁한 사업체에서 생산으로 조사됨)

#### ※ 생산조사시 유의사항

- 생산중인 중간제품이 조사품목으로서 외부로 출하되거나, 다른 공정에 투입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생산에 포함하여 조사(일괄공정중에 있는 품목이라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예) 다음 표에서 처럼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순면사,순면직물)단체를 거쳐 기성외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중간제품인 순면사, 순면직물은 출하도 되고, 최종제품인 기성보통외의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투입도 되고 있으므로 세품목 모두 조사대상임.



- 조사표Ⅲ에 해당되는 품목이거나, 3개월이상의 장기 공정을 요하는 품목은 매월의 진척량을 조사(당월 진척량을 생산으로 조사하고 출하된 것으로 간주)
- 생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으로 파악

#### 바. 구입

- ※ 외부구입,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이 생산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하여 조사됨
- 조사표 I 은 『외부구입』 과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II표는 이들을 합하여 『구입』 란에 기입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이 있는 경우만 조사
  - 따라서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은 조사대상품을 원재료나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원재료 및 연료』 항목으로 조사함에 유의
- 구입 물량(외부구입, 예외)을 출하, 재고 조사단계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구입량을 제외하고 조사(단,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은 자체생산과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조사)
- 구입 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한 구입가격으로 함

## 1) 외부구입

- 타기업 또는 동일기업내 비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
-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주문생산시켜 입고한 량 (OEM생산 포함)
- 외국에서 수입한 것
- 이미 출고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처리될 것
- 타 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주의 : 다음 사항은 구입으로 조사해서는 안됨.

- 반품된 제품 중 폐기될 제품
- 보유 물량이 부족하여 자사 직매장에서 이미 출하된 제품을 회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을 경우
- 단순 수선가공, 처리 등으로 반품처에 재출고될 제품
- 해체되어 생산 공정에 재투입될 제품

## 2) 동일기업내 타공장구입

- 동일기업내 타 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 거래로 받은 것
  -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에서의 구입은 외부구입임에 유의

## 사. 동일공장내 재투입

※ 출하와 구별하고 생산-출하-재고의 함수관계 검증을 위한 조사항목임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량
- 동일 공장내 타산업(건설업 등)으로 사용될 때는 국내시판으로 조사함에 유의

☞ 주의 : 다음의 경우는 재투입이 아닌 기타출하로 조사

- 국내의 견본, 선물, 전시용 (단, 외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로 간주)
- 사무실 및 공장의 사무용, 시험연구용, 설비보수, 확장공사용
- 다른 제품의 제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조사품목(예: 자연치즈)이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예: 가공치즈)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재투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초생산(자연치즈)에서 차감하고 최종제품(가공치즈)생산을 합하여 조사함에 유의

예를 들어

- 골판지를 생산하여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경우
- 릴상태의 비디오를상필름을 케이스에 담긴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 생산한 커피로 커피믹스를 만드는 경우
- 자연치즈를 생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가공치즈를 만드는 경우

	월 초 재 고	생 산	동일품목의 원재료로 사용	출 하	월 말 재 고
자 연 치 즈	20	100	30	60	30
가 공 치 즈	0	50	0	40	10
조사표 작성	20	120	0	100	40

- 자연치즈 생산량은 총100중에서 가공치즈 생산을 위해 사용된 30을 제외한 70이 되며 가공치즈생산량 50을 더하여 총생산은 120이됨
- 자연치즈와 가공치즈가 같은 품목개념이므로 재투입으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재투입 유형
  -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당해공장에서 생산된 코오크스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다른 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금액조사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야. 출하

- 제품 출하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 등의 목적으로 공장관할 밖의 외부로 출고함을 의미

- 따라서 단순히 보관만을 위하여 공장내 창고, 타 지역에 있는 자기창고나 타인창고로 이송된 것은 출하가 아니며
- 대금을 받았더라도 공장 밖으로 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된 것이 아님
- 조사대상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출하로 조사(단, 구입분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출하에서 제외)
- 위탁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수탁업체에서 직접 출고되는 경우 위탁생산업체에서 출하로 조사

### 1) 국내시판

- 자체생산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 소비자 등에 판매
  - 수탁생산 제품을 위탁업체로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나 영업소 등에 출하(단 생산시설이 없는 본사에서 해당 제품을 가공없이 외국으로 재출하하는 경우는 수출로 조사)
- 내국신용장수출(Local수출) 중 국내의 타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수출용 완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의 출하
  - 단, 그 제품을 인수하는 공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재료, 부품,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
- 국내시판금액
  - 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경우는 이들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함
  - 수탁제품인 경우는 원재료비와 가공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조사

## 2) 수출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한 출하
- 주한 외국군에 출하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SKD, CKD 방식에 의해 수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함 (단, 승용차는 KD세트가 별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SKD(Semi Knock Down) : 제품을 반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해체하여 수출
- 국내에 있는 면세점에 납품
- 수출금액
  -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월평균 환율 적용

※ 참고: 수출은 무역거래법 제3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자기명의 수출과 타인명의 수출로 구분됨

수출유형	수출 방법	조사 방법
자기명의 수출	대상사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직접 수출	수출
타인명의 수출	대상사업체가 수출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은 타업체를 통해 수출	수출
	대상사업체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수출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을 공급 (내국신용장 수출 : Local수출)	수출
	대상사업체의 출하제품이 타사업체의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어 수출되는 경우	국내 판

## 3)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및 기타

-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의 타공장으로 출하

- ☞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 타공장으로 출하되는 경우는 국내시판으로 조사함에 유의
  - 단, 이 경우에도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국내시판이 아니라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
- 동일기업 타공장출하 유형별 처리내용

동일기업 타공장출하 유형		보내는 공장	받는 공장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제품 생산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구입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지 않음	(받는공장에서) 원재료로 사용		원재료
	(받는공장에서) 자기사용 국내로 재출하 외국에 재출하	국내시판 국내시판 수출	조사대상의

- 기타출하는
  - 조사품목이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
  -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시험연구, 설비보수 및 확장, 제품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를 위해 출하한 경우를 말함

※ 금액조사 품목은 국내시판 금액의 평가방법에 준함

## 자. 과부족 조정

- 과부족 조정사유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 기타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 생산, 출하, 재고와의 관계
  - 전월말재고(월초재고) + 생산 + 구입 - 재투입 - 출하 ± 과부족조정 = 월말재고(조사표 I)
  - 조사표 II의 경우는 과부족 조정란이 없는 관계로 위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월말재고의 증감차이가 많은 경우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 차. 재 고

- 매월말 현재 조사대상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체생산제품 및 위탁생산제품
  - 타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1기업 1사업체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창고는 공장창고로 봄
- 현금 또는 외상판매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 (단,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수탁업체에서 보관중인 것도 재고에 포함됨
-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외부구입의 경우 자체생산분과 구분이 가능하면 제외)
- 금액조사 품목은 실제 재고액을 기입
  - 재고액 평가방법은 출하액 평가 방법과 동일

## 3. 조사표 III 작성요령

### 가. 품목부호, 품목명

- 지정품목에 한해 조사표 III으로 작성
  - 지정품목 이외의 품목 중 장기공정으로 인해 진척률조사를 하는 경우는 조사표 I, II를 사용하여야 함에 유의

나. 품목변동부호

- 조사표 I, II 작성방법과 동일

다. 단위

- 지정단위를 사용

라.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량
- 국내수주량과 수출수주량으로 구분 기입

마. 당월진척량

- 수주량에 조사일의 공정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률 누계를 곱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빼고 계산
- 국내진척량과 수출진척량으로 구분 기입

바.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누계를 뺀 잔량
- 국내수주잔량과 수출수주잔량으로 구분 기입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전월말 수주잔량+당월수주량-당월진척량=당월말 수주잔량

사. 당월 완성품 인도량

- 공정 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선박 또는 철도차량 등의 납품량을 기입
- 완성품 인도 톤수 및 척(대)로 구분 조사

#### 4. 원재료 및 연료사용, 재고란 작성요령

##### 가. 원재료

- 조사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원료(재료)와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재료)를 말함.
- 원재료의 구분
  - 국산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 수입 : 외국수입 원재료
- 제품생산이 위수탁관계에 있는 경우는 위탁생산업체에서만 조사하고 수탁생산업체에서는 조사하지 않음에 주의

##### 나. 품목번호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정한 번호를 정확히 기입

##### 다. 원재료명 및 연료명

-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해 기입
- 지정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비중이 크거나 주요 원재료인 경우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
- 연료에 대해서는 조사표상에 인쇄된 연료만 조사

##### 라. 품목변동사항

- 『제품, 출하, 재고』란의 유고사항과 동일

##### 마. 단위

- 『지정원재료분류표』의 지정단위 사용
- 사업체 사용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른 경우 지정단위로 환산기입

## 바. 구분

- 부호
  - 국산원재료 ----- 1
  - 수입원재료 ----- 2
- 국산 및 수입원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조사에

원재료 및 연료명	단 위	구 분	월중사용량	월말재고량
소 맥	M/T	1	50	200
소 맥	M/T	2	20	150

## 사. 월중사용량

- 원재료 사용량
  - 조사대상기간중 사용된 지정원재료의 실제 사용량을 기입
  - 원재료 사용량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조사품목생산을 위해 창고로부터 공장의 제조공정에 출고된 원재료수량 기입
  - 조사대상제품과 비조사대상품목에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사용량만을 조사
  - 생산량(또는 금액), 설비비율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해 비례배분 하여 조사대상품목에 투입된 원재료 사용량을 파악
- 연료 및 전력사용량
  - 조사대상·비조사대상품목에 관계없이 사업체에서 사용한 총 연료 및 전력량을 조사

## 아. 월말재고량

- 사업체내에서 자체 생산한 원재료 및 연료와 외부에서 구입한 원재료 및 연료의 월말현재 재고수량
- 기타 정의는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따름

## 5. 고용 및 조업상황란 기재요령

### 가. 조사대상

- 조사업체의 종사자(상용 및 일고포함)의 변동사항과 종사자에 대한 조업현황
- 회계나 경영이 독립되어 있는 본사의 종사자는 조사에서 제외하나,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조사
- 용역회사 인원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포함

### 나. 금월말 상용종사자수

- 해당 조사월 말일 현재의 종사자수
- 월말 종사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수시로 종사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됨)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체에 고용된 자
-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도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을 대상사업체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용종사자에 포함

종사자 구 분	상용종사자 (조사대상)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및 일용 (조사제외)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 ※ 주의사항

- 급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사자(상시, 임시·일고)는 월말 종사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 휴업 및 기타 사유(폐업제외)로 조업이 중단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조사
  - 휴업은 되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

### 1) 생산직 종사자

-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사자와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함
- 단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사자로 보지 않음

### 2) 사무직 및 기타종사자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
  -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종사자
- 단, 레미콘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에서 레미콘차량의 운반 수단을 레미콘생산을 위한 주된 활동으로 분류하므로 레미콘 운전기사는 생산직종사자로 분류

### 3)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단, 주당 18시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 다. 월중 상용종사자 입직자

- 해당월중에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새로 사업체에 들어온 상시 종사자수

라. 월중 상용종사자

- 해당월중에 자진퇴직, 해고, 사망, 전출 등으로 사업체를 떠난 상시종사자수

마. 월중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 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사자 일부가 조업을 하였더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바.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교대

-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frac{\text{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text{월 중 조업 일 수}}$
- 교대작업일 경우 교대작업이 몇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입

사. 증감사유

- 항목별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기입예

	증 감 사 유
① 입 직 자	본사에서 6명 전입, 신규채용 5명
② 이 직 자	타공장으로 10명 전출 설비자동화로 20명 감축
③ 조업일수	노사분규로 4일 단축

※ 주의사항

- 1개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2종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업 사항은 사업체의 주된 산업이 나타나는 조사표에만 기입함에 유의

## 6. 비교사항

- 사업체의 특기사항 기입

# Ⅲ. 조사표검토 및 입력

## 1. 조사착오 유형

<유형1> 조사대상업체를 조사누락 하거나 대상의 사업체를 조사

- 대규모조사대상업체가 신설되는 경우는 경제신문이나 지방신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조사
- 비제조업체(도소매업 등)가 제조업체 등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아님에 유의

<유형2> 품목개념 및 포괄범위 착오

- 원재료와 제품을 혼동하여 분류
  - 합성수지(24)와 플라스틱제품(25)
  - 합성섬유(24)와 합성섬유사(17)
  - 농약(24)과 농약원재(대상외)
- 형태나 용도가 비슷한 품목간의 분류 착오
  - 메리야스외의의(17)와 기성보통외의의(18)
  - 플라스틱자동차부품(25)과 자동차부품(34)
  - 금속박지(21)와 알루미늄박(27)
- 사업체에서 품목별 분리조사가 어렵다고 한품목에 포함조사
  - 혼방섬유사 또는 직물
  - 자동차부품(기관용부품, 차체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 포괄범위가 같은 일부품목을 제외
  - 유산균발효유에서 조사대상인 호상제품을 제외
  - 경운기에 관리기를 제외하여 조사

<유형3> 품목확인 소홀(품목누락)

- 생산하여 재투입되는 원재료가 지정품목인데 누락
- 신규 생산되는 제품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고 누락

<유형4> 동일기업내 공장간 중복 조사

- 본사와 함께 있는 공장에서 지방의 타공장분을 합산조사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도 이중조사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서 인수(구입)한 량을 생산량에 포함

<유형5> 위·수탁관계에서의 중복·누락

- 위탁생산량 또는 수탁생산량을 누락하여 조사

<유형6> 출하포착시점의 혼동

- 염색, 도금 등 공정일부를 임가공하기 위해 단순 출고된 량을 출하로 조사
- 단순 보관을 위하여 타지역에 있는 창고에 이송된 것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

<유형7> 내수·수출의 착오

- 타사에 납품되어 수출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수출로 조사
- 내수·수출물량을 바꾸어 조사

<유형8> 재투입물량의 혼동

- 생산된 제품이 동일공장내 타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재투입으로 조사

<유형9> 단위환산 착오

- 동일 특성의 단위를 잘못 적용( $l \rightarrow kl$ ,  $kg \rightarrow M/T$ )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그대로 적용
- 수량을 금액으로 조사

### <유형10> 잠정·확정치의 현격한 차이

- 잠정조사표 작성시 조사자 임의로 전월실적과 비교하여 작성
- 전월 착오내용을 산업동향과에 통보없이 조사자 임의로수정

### 2. 중점 검토사항

- 단위는 정확히 적용하였으며, 조사단위와 물량(금액)을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매월 조사되던 품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전월말재고+생산+구입-재투입-출하=금월말재고』의 등식이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과부족조정』 사유가 생겼는가?
- 원재료 사용량과 생산량을 비교할 때 이상한 점은 없는가?
- 조업일수나 종사자수, 연근무시간수 등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는데도 생산이 감소한 경우(또는 그반대) 등 관련사항간에 의문은 없는가?
- 전월에 비해 생산, 출하, 재고의 증감폭이 큰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잠정치 자료인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신뢰성이 있는가?

### 3. 수시 확인 점검사항

- 대상사업체에서 새로운 조사대상품목이나 유사품목이 생산되지 않는가?
- 조사중인 품목이 지침서의 포괄범위나 개념에 부합되는가?
- 사업체 담당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 4. 조사표 입력

- 조사표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력하되, 입력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동향과에 통보한 후 최대한 조기에 조사하여 조사표 송부
-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이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매월 입력(휴업의 경우도 동일)
- 유고사업체라도 조사중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입력하여야 함
- 품목별 물량이 전월에 비해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는 비고사항에 조사항목별로 증감사유를 반드시 입력

### IV. 광공업동태 조사표 내검요령

#### 1. 일반사항란

- 가. 조사표 상단의 □□월분의 기입과, 잠정자료, 확정자료중 어느 하나에 ○표시 되어 있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나. 조사가 누락된 항목은 없으며, 전월에 없었던 항목이 추가되는 않았는가?  
→ 확인하여 기입 또는 정정
- 다. 사업체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었는가(파업, 설비보수 기간 및 사유, 설비증설 등)  
→ 확인하여 기입

『생산직+사무직·기타+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계』

→ 틀릴 경우 전월말 상용종사자 대조 및 관련사항을 확인

- 나. 월중 상용입직자수와 이직자수가 금월말 상시종사자수의 10%이상이면 관련사항을 확인
- 다.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이 10시간이상이면서 1교대이면 관련사항을 확인

## V. 조사대상사업체 관리요령

### 1. 개 요

#### 가. 관리목적

- 조사대상 사업체 및 조사 품목의 변동상황에 대해 신속, 정확한 파악을 통해 사업체 및 품목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고 정도 높은 통계 작성에 기여

#### 나. 대상 사업체

- 광공업동태, 생산능력, 기계수주조사 사업체

#### 다. 대상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 라. 관리 체계

- 매월 지방사무소에서 1개월간의 사업체 및 품목 변동내역을 파악하여 익월 5일까지 전산(SM)입력하면, 이를 산업동향과에서 검토 후 조사대상사업체 확정

#### 마. 관리 단위

- 기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체 단위(공장, 작업장, 광산 등)
- 사업체의 사정으로 기업 본사에서 조사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개개 사업체별로 관리

#### 바. 관리 사항

- 기존 조사 대상 사업체의 변동 사항
  - 휴업, 폐업, 진출, 전입, 누락, 합병, 관할신규, 관할해소, 대상외
  - 생산 품목의 중단, 신규 생산, 착오, 전입, 진출, 누락, 관할신규, 관할해소
  -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응답자 등 변경
- 신규 조사대상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사. 관리 방법

- 지방사무소
  - 매월 기존사업체의 사업체 변동 및 품목별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전산(SM)에 입력
  - 시·도, 공단, 언론 등을 통해 신규 및 누락사업체를 발굴한 경우 동태조사 대상업체 여부를 파악한 후 전산(SM)에 입력
  - 기존사업체의 변동사항은 “사업체관리 변동사항 보고서”에 신규 및 누락사업체는 “신규 및 누락사업체 전산입력양식서”에 기입한후 사업체관리 운영프로그램(SM)에 전산입력
- 산업동향과
  - 조사관리과에서 통보한 신규사업체의 조사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체관리 대상사업체로 편입
  - 전산입력된 변동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변동내역별 집계
  - 매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 대상사업체 보완

아. 보고 방법

- 지방사무소는 사업체관리 변동사항 보고서와 신규 및 누락사업체 전산입력 양식서를 매월 작성
- 사업체관리 변동사항 보고서는 자체 보관하고 신규 및 누락사업체 전산입력 양식서는 사업체 발견 즉시 산업동향과로 FAX 송부
- SM에 입력·수정된 내용을 확인·보완하고 수정사업체 명부를 출력하여 검토한 후 자체 보관

2.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 관리

가. 신규 사업체

<기본 방침>

품목 특성	전수 및 표본 조사 여부	처 리 방 법	
전국품목	전수품목	발견 즉시 산업동향과로 통보하고 사업체관리 후 조사 실시 (누락사업체인 경우는 95. 1월부터 소급조사)	
	표본	종사자수 100인 이상	"
	품목	종사자수 100인 미만	산업동향과로 통보한 후 산업동향과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체관리 및 조사 개시
지역품목	· 각 시·도의 지정품목인 경우만 해당되며 사업체 관리 및 조사는 전국품목과 동일		

나. 휴·폐업 사업체 관리

1) 휴업

- 생산설비가 있으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 향후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체
- 매월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누락 방지
- 생산 재개시 사업체관리(SM) 보고

## 2) 폐업

- 생산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 생산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나 타사업체로 합병되는 사업체
- 휴업이 6개월이상 지속되고 생산재개 움직임이 없는 경우 폐업처리
  - 단, 계절품목(천일엽, 벽돌 등)은 휴업이 6개월이상 지속되더라도 폐업으로 처리해서는 안됨.

### 다. 시·도간 사업체 이전

#### <전입지에서의 처리방법>

- 전국지수품목 조사사업체→ 사업체관리(전입)후 조사
- 지역특성품목은 지정품목으로 채택된 시·도에 해당되는 사무소에 한하여 사업체관리(전입)후 조사
- 전국 및 지역특성품목 동시조사 사업체는 전국지수 품목은 무조건 조사대상이며, 지역품목은 해당사무소만 조사대상

#### <전출지에서의 처리방법>

- 사업체관리(전출) 후 전입지 사무소에 해당사업체의 전월 조사표 및 내검기록부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 3. 사업체관리 변동사항 보고서 작성방법

###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 1) 사업체 관리 변동사항 보고서는 변동된 내용만 기재
-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필요한 경우 영문사용 가능)로 기재

### 나. 항목별 사업체 관리현황 작성요령

#### 1) 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고유번호는 변경지시가 없는 한 바꿀 수 없음

- 신규 또는 누락된 사업체의 고유번호는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 2) 사업체명

- 사업체명은 공식명칭을 기입

☞ 예 : ××공업(주)울산공장, (주)××산업 창원공장

- ☞ 모집단명부상 사업체명과 공식명칭이 다른 경우 공식명칭을 기입

## 3) 공장소재지 및 행정구역 분류부호

- 소재지는 현재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를 기재

① 여러개의 법정동이 모여서 하나의 행정동을 구성하는 경우는 법정동명을 사용

(예 : 행정동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가동은 법정동인 경운동, 청진동, 재동 등으로 구성)

②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행정동명을 사용

(예: 법정동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은 행정동인 역삼1동과 역삼2동으로 분리)

- 사업체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분류부호가 개정되는 경우는 신부호로 정정

## 4) 업체종사자

- 사업체의 월말 종사자수

- 기업종사자와 구분하여 작성

- 종사자수 변동사항은 산업동향과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변경

## 5) 기업종사자 및 기업구분

- 하나의 기업체(회사)는 여러개의 사업체(공장)와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종사자는 여러개의 사업체 및 지사 등 종사자 총합계를 기입

예) ○○기업체가 수원에 종사자가 110명인 수원공장, 청주에 종사자가 125명인 청주공장, 부산에 종사자가 136명인 부산지사가 있을 경우 기업종사자수는 모두 합한 371명(110명+125명+136명)임

- 기업구분은 대기업(1)과 중소기업(2)을 구분하여 기입

6) 응답부서, 응답자, 전화번호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명과 전화번호 (지역번호까지)를 기입

예) (0345)491-1361 ⇒ 0345-491-1361

7) 산업분류

- 지정품목의 연간출하액을 기준하여 지정품목들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소분류(3단위)로 기입하되

- 동일 사업체에서 조사표를 달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사표를 사용하는 지정품목들의 연간 출하액을 기준하여 비중이 가장 큰 품목들의 산업소분류를 기입

8) 조사표 종류

- 사업체에서 작성되는 조사표 종류에 따라 해당된 조사표의 부호를 기입

◇ 조사표 종류 부호 ◇	
1. 광공업동태 I	2. 광공업동태 II
3. 광공업동태 III	4. 생산능력
5. 기계수주	

- 단일 사업체에서 조사표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는 해당되는 부호를 모두 기입

9) 작성구분

- 당해사업체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면 1, 타공장(공장이 2개이상인 경우)에서 작성하면 2, 사업체와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본사에서 작성하면 3으로 기입

10) 입력구분

- 사업체 직접입력방식 채택업체 여부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부호 기입
  - 1 → 사무소
  - 2 → 사업체

11) 창설년월

-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월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는 현 사업체가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연월(가동년월)을 말함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시점을 창설년월로 조사)
- 본사와 사업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업체가 신설된 때를 말하며, 업종(대분류)이 변경된 때는 변경시점이 창설년월이 됨
- 동일 업종으로 사업주 또는 상호만 변경된 때는 창설된 것으로 보지 않음

12) 변동부호 및 변동내용

- 변동부호는 5자로 기입하되 첫째자리는 변동부호를, 뒤의 4자리는 변동년월을 기입

13) 담당자 및 조사구번호

- 해당 사업체를 담당하는 사무소 직원의 이름과 개인번호(ID)를 기입

14) 품목명 및 품목번호

- 사업체에서 실제사용하는 품목명과 지정품목번호를 광공업동태와 생산능력을 구분하여 기입
- 동일공장(사업체)에서 여러개의 조사지정품목이 생산되는 경우는 난을 달리하여 기입

15) 최초생산, 품목변동

- 최초생산 : 해당 지정품목을 최초로 생산한 연월을 기입
- 품목변동 : 변동부호를 5자리로 기입하되 첫째자리는 품목변동번호를, 나머지 4자리는 품목변동년월을 기입

예를 들어 '96. 7월에 최초로 생산하였던 품목을 조사누락 시켰다가 '97. 10월에 발견한 경우 최초생산은 '9607'이며, 품목변동은 '69710'(누락)으로 기입

16) 변동사항

(가) 사업체변동사항

◇ 사업체 변동부호 ◇		
1. 신 규	2. 폐 업	3. 휴 업
4. 전 입	5. 전 출	6. 누 락
7. 관할신규	8. 관할해소	9. 중지, 대상외
0. 합병, 흡산		

① 신규

- 산업동향과에서 표본 대체를 위해 새로이 지정한 사업체
- 조사지정품목의 포괄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사업체)이 새로 설립된 경우

② 폐업

- 생산설비를 완전 매각처분하였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생산설비가 해체된 경우
- 합병으로 타공장에 흡수된 경우

③ 휴업

- 생산시설과 건물을 유지한 채로 1개월이상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단, 6개월이상 휴업 중인 사업체로서 생산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체는 폐업으로 정리

④ 전입, ⑤ 전출

- 행정구역(각시·도)의 경계를 달리하여 공장(사업체)설비가 이동되는 경우, 이전한 장소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는 전입, 이전하기전 장소의 관할 지방사무소에서는 전출
- 행정구역 관할변경으로 소속 시·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전·출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동일 시·도 내에서의 사업체이동은 전입·전출로 보지 않음에 유의
  - 이 경우는 소재지 변경(관할 지방사무소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관할 변경(관할 지방사무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서울(서울사무소)에서 경기 수원(경기사무소)로 사업체가 이전되는 경우는 전출입에 해당되나, 경남 김해(경남사무소)에서 경남 진주(진주출장소)으로의 사업체이전은 조사관할 변경에 해당

⑥ 누락

- 사업체 발견시점이 실제가동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신규”와의 구분철저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 사업체가 이전하였으나 행정구역분류상의 시·도는 바뀌지 않고 사무소(출장소)간의 관할만 바꾸는 경우
- 사업체의 소재지(위치)는 바꾸지 않았으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예 : 본사조사에서 사업체조사로 변경)

⑨ 조사중지, 대상외

- 광공업 사업체로서 광공업동태조사 대상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광공업동태조사 업체가 타산업(건설, 도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⑩ 합병·합산

- 조사대상 사업체가 타 조사대상 사업체를 흡수하여 경영 및 장부조직이 완전하게 하나의 사업체로 결합되는 경우 → 피합병사업체는 폐업처리
  - 조사대상 사업체가 타 조사대상 사업체를 흡수하였으나 경영 및 장부조직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체의 명칭만 변경
- ⇒ 합병 및 합산의 경우 사업체 이전 처리방법과 같이 피합병 사업체의 전월조사표 및 조사내검기록부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나) 품목변동사항

◇ 품목 변동부호 ◇					
1. 신	규	2. 중	지	3. 착	오
4. 전	입	5. 전	출	6. 누	락
7. 관할신규		8. 관할해소			

① 신규

- 기존사업체에서 설비 신설 등으로 지정품목을 새로이 생산

- ② 중지
  - 사업체에서 조사중이던 품목에 대한 생산설비 폐기 등으로 생산을 중지
- ③ 착오
  - 품목개념, 범위 등의 착오로 잘못 조사된 품목
- ④ 전입, ⑤ 전출
  - 해당품목이 시·도간의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이전
  - 사업체 전·출입시 반드시 품목에도 전·출입부호 기입
- ⑥ 누락
  - 사업체에서 생산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조사하지 못한 품목
- ⑦ 관할신규, ⑧ 관할해소
  - 사업체의 관할신규 또는 관할해소가 발생하는 경우 품목도 동일하게 관할신규 또는 관할해소로 처리

17) 비고(기타사유)

- 조사대상 공장(사업체)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기입예

- 경기도에서 전입, 서울로 전출
- 현지 발견으로 신규, 중앙지시로 신규
- 설비 완전폐기로 폐업 등
- 사업체 변경, 동일 시·도내 주소이동, 전화번호 변경, 작성구분 변경, 조사종류 변경은 유고부호가 없으므로 변경내용만 기입
- 대상외, 6개월이상 휴업 등의 유고내용이 발생한 조사대상 사업체는 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 기타 참고되는 사항을 기입

#### 4. 사업체전산입력양식서 작성방법

- 사업체 및 품목의 신규 또는 누락시 작성
- 기타사항은 “사업체관리 변동사항보고”와 작성방법이 동일하며 다음사항을 추가로 작성

##### 가. 응답부서2

- 광공업동태와 기계수주의 응답자가 다른 경우 기계수주의 응답부서, 응답자 및 전화번호 입력

##### 나. 주요제품 생산공정

- 주요 지정품목명을 기입하고 생산공정을 간략히 기입
- 공정은 8단계 이내로 하고 공정별로 8글자 이내로 기입

##### 다. 동일기업내 타공장에 관한 사항

- 동일기업내 타공장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수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1공장 1본사는 작성하지 않음)
- 작성순서는 본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
- 사업체번호
  - 사업체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조사관리과나 해당사업체의 관할 사무소를 통하여 파악
- 사업체명은 기업체의 공식명칭과 공장명을 기입
- 소재지 및 행정구역번호, 전화번호를 기입
- 조사여부란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부호를 기입

—	단독으로 별도 광공업동태조사중인 사업체	-----	1
—	합산조사되는 사업체	-----	2
—	본사사무실	-----	3
—	동태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체	-----	4

- 품목번호, 품목명
  - 광공업동태조사 대상품목 위주로 작성
  - 광공업동태 대상의 품목인 경우는 광공업통계조사 품목 번호(8자리)와 품목명을 기입

## 5. 사업체관리시 유의사항

- 반드시 주어진 기일을 엄수할 것
- 응답자, 전화번호 등 변동내용이 미미하더라도 “사업체관리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
- 품목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변동부호 ‘누락’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로 보고해서는 안됨

# VI. 산업생산지수의 개요 및 편제

## 1. 산업생산지수의 의의

- 산업통계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등의 실물부문의 경기변동을 명확히 밝혀주기 위한 통계로서 산업별로 구분하면 광공업통계, 도소매업통계, 서비스업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란 산업통계의 일종으로서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체들의 생산·출하·재고에 관한 활동을 부문별 또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와 이론에 의해 지수형태로 표시
- 지수란 주로 같은 종류의 통계측정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액이나 수량적인 변화를 보일 때, 그 변화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비교하기 쉽게 계산한 일종의 통계비례수로서
  - 금액, M/T, m<sup>2</sup>, kl, km, 個, 켈레, 등 상이한 단위로 파악되고

있는 제품들을 종합하여, 이들 전체의 동향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지수가 가장 적합

- 지수는 큰 수자들을 다루기 쉬운 작은 수자로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
- 전문적인 분석을 위하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 변동영향 등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는 통계 측정치들을 지수화하여야 가능
- 지수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가격지수(금액지수)와 수량지수로 대별되며, 편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지수와 종합지수(단순종합지수, 가중종합지수)로 구분
-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의 생산·출하·재고량의 변동상황을 매월 사업체별로 조사하여 이를 199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한 수량지수 형태로 작성
-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
  - 지수가 포괄하고 있는 산업의 생산활동이 국내 또는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뿐 아니라, 도·소매, 무역, 운수업 등을 비롯한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동향은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지표임
  - 이들 산업의 활동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의 움직임은 곧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임
  - 일반적으로 경기후퇴기에는 수요부진으로 출하가 감소하여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재고가 쌓이면 생산을 감축
  - 경기가 좋아지면 제품수요의 증가에 따라 출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고가 부족하게 되어 생산을 확대
  - 따라서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을 보면 경기변동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의 동향까지도 파악이 가능

## 2. 산업생산지수의 연혁

- 우리나라 산업생산지수는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1957년에 1955년을 기준연도로 산업별 종사자수를 가중치로 하여 Laspeyres산식에 의하여 편제
- 그후 1958년 광공업센서스 결과가 1959년 발표됨으로써 1958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센서스"부가가치 개념의 생산지수 작성
- 그후 수차의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른 산업구조의 현저한 변화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가중치의 현실화와 대표품목계열을 확대 조정하는 등의 지수개편작업을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작성기관은 1968년까지 한국은행, 1969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이 전담하다가 1970년 7월 통계청(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이관
- 통계청에서는 산업생산지수 편제에 필요한 월별 물량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되는 광공업동태조사를 지정통계로 고시
- 1997년 10월에는 최근의 산업구조 변동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995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5년 주기의 지수개편 작업을 완료하여 1995년 기준 지수를 편제, 공표

## 3. 산업생산지수의 편제내용

### 가. 산업생산지수의 특성

- 1) 기준시점이 특정되어 있다.

지수는 주로 어떤 시점을 100으로 놓고 볼 때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떠한가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데 1995년도 광공업 및 전기·가스업의 부가가치·생산·출하·재고 실적을 기준으로 가중치와 기준물량을 정하여 지수작성

- 2) 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대표계열이 선정되어 있다

모든 광공산품 및 전기·가스공급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 및 지역의 산업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대표적인 품목만을 선정하여 이들 동향만을 조사한 결과를 가공하여 지수화

3) 일정한 가중치 체계를 갖고 있다.

개별대표품목이나 업종의 산업내 비중이 상이하므로 개별품목이나 업종(개별지수)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중치를 반영

4) 지수산식이 미리 정하여져 있다.

지수산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라스파이레스』 산식(기준시 고정 가중산술 평균법)을 이용

5) 실질 지수화되어 있다.

가중치는 부가가치액, 출하액, 재고액 등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수량을 조사하여 지수를 작성하므로써 가격상승에 따른 지수 증가분은 제거되고 실질 증가분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

6)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에 대한 조사이다.

대표품목 생산업체 모두를 조사하지는 않고 정교한 표본이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써 그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업체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음

## 나. 지수의 범위

산업상의 포괄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따른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 다. 대표계열

### 1) 선정기준

- 대표계열은 월별 자료수집의 가능성, 생산동향 파악의 지속성, 산업분류상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 대표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선정
- 이에 따라 1995년 광공업 총 생산액의 1/5,000 이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출하내역별(내수,수출)특성과 산업별 대표도를 고려하여 665개 품목을 선정

### 2) 계열의 유형

- UN권고와 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별 생산량을 원칙적으로 지수작성의 기준으로 설정
  - 품질 및 규격이 다양하고 수량적인 파악이 어려운 77개 품목(의약품, 화장품, 의복, 자동차부품등)은 금액을 지수작성의 기준으로 하였음
- ※ 금액조사 품목에 대하여는 경상가격으로 조사된 금액계열을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해당 품목(업종별)지수에 의하여 불변계열로 산출한 후 지수화

## 라. 가중치

- 산업생산지수는 산업의 부가가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각 품목별로 기준연도의 요소비용에 의한 국내순생산을 기준으로 가중치 산정
- 따라서 광업과 제조업부문의 가중치 모집단 자료는 '95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의 센서스부가가치를 기초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전기업은 한국전력공사, 가스업은 도시가스 생산업체의 결산서를 기초로 산출

1) 광업·제조업 가중치 모집단 산출

※생산액 = 제품출하액(폐품판매액 등 포함) + (제품연말재고액 - 연초재고액) + (반제품, 재공품 연말재고액 - 연초재고액)

※센서스부가가치 = 생산액 - 직접생산비(원재료비+전력비+용수비+위탁생산비+수리유지비+연료비)

※부가가치 가중치 모집단 = 센서스부가가치 - 간접생산비 - 감가상각비 - 담배소비세 + 정부보조금

- 광공업통계조사의 부가가치(센서스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만을 공제(간접생산비, 감가상각비와 담배소비세, 자가소비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보조금은 제외)
- 따라서 센서스부가가치에서 자료확보가 가능한 일부 간접생산비(임차료, 세금공과금, 광고선전비, 운반비, 여비, 보험료 등)와 감가상각비 및 담배소비세를 공제하고, 정부보조금을 더하여 요소비용 개념에 접근
- 센서스 부가가치의 조정은 자가소비분 조정(품목 단계에서 조정)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단계에서 이루어짐
- 한편 광공업통계조사에서 품목별 부가가치는 산출되지 않으므로 사업체별로 센서스부가가치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사업체의 품목별 생산액 크기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사업체의 품목별 부가가치를 산출한 후 동일품목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하여 전체 품목별 부가가치를 산출
- 산업소분류, 중분류 등 상위분류의 부가가치는 품목별 부가가치를 합계하여 산출

## 2) 전기·가스업 가중치 모집단 산출

- 전기·가스업의 가중치 모집단은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 생산업체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결산서를 토대로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및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출

## 3) 비채택품목들의 부가가치 분배(확대 가중치 산출)

- 산업세세분류내에서 비채택품목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채택품목에 비례배분
- 따라서 산업생산지수의 가중치는 채택품목만이 아니고 비채택품목까지 포함한 산업전체를 반영하는 확대가중치임

## 4) 가중치 산정

- 산업생산지수의 품목별 및 업종별 가중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부가가치의 산업(광공업 및 전기·가스업의 가중치 모집단) 전체 가중치 10,000.0에 대한 구성비

### 마. 기준물량

- 1995년 월별 생산량을 평균하여 산출
- 월별 생산량 자료는 광공업동태조사에서 수집

### 바. 지수의 산식

- "Laspeyres" 산식을 사용하여 지수를 편제  
이 방법은 기준시점을 고정시키고, 기준시점의 고정 가중치로 수량 비율을 가중 평균하는 "기준시점 고정가중산술 평균법"

### 사. 지수의 접속

- 1990년 기준 과거 시계열은 1995년 기준지수로 접속
- 접속계수는 단순비례법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및 총지수별로 각각 접속계수를 산정하여 연결

$$1990\text{년 기준 접속계수} = \frac{100.0}{1990\text{년 기준의 } 1995\text{년 평균지수}}$$

### 아. 원지수와 계절변동 조정지수

- 조사결과를 그대로 지수화 하는 것을 원지수(original index)라 하며 계절성이 내포되어 있음
- 원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계절성을 제거한 지수를 계절변동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라고 함
- ※ 경제시계열인 산업생산지수의 원계열은 다음의 변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추세변동이란 인구증가, 경제규모의 장기적인 팽창등에 인한 변동이며,
  - 순환변동이란 경기의 상승과 하강국면이 장기적(1년 이상)으로 되풀이되는 변동
  - 계절변동이란 기후나 사회적 관습 등 1년을 주기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야기되는 변동
  - 불규칙변동이란 위의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은 변동으로서 화재, 파업, 홍수, 풍년, 흉년 등 우발적인 사회현상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동을 말한다.

#### ☞ 계절변동조정지수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1월의 생산원지수가 전월대비 5% 감소하였다고 할 때 이것으로 곧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년 1월이 전월인 12월에 비해 약 7% 정도 감소하는 것이 통례이라면 1월의 5% 감소는 오히려 2%정도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월비나 전분기비 등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동향 판단을 위한 자료는 원지수가 아닌 계절변동을 조정한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 자. 사업체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방법

### 1) 조사모집단

-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종업원 20인(강원, 제주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중 대표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단, 쇠석, 냉동물고기, 어육연제품, 제재목, 포장상자 및 통, 콘크리트벽돌, 내화벽돌, 장식 및 기념석제, 전자재용석물제품은 5인이상 사업체)

### 2) 조사대상 사업체 선정

- 조사대상품목을 전수조사품목(품목당 생산업체수가 전국적으로 20개이하이거나, 시·도별로 3개이하인 품목)과 표본조사 품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 표본조사품목생산업체 가운데도 종사자수가 100인이상이면 모두 조사
- 표본사업체는 출하액크기 및 분포에따라 선형계통추출하여 선정

## 차. 지수의 분류

### 1) 업종별 분류지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3개 대분류와 26개 중분류 및 64개 소분류지수로 구분
- 소분류내의 중요한 업종은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지수 작성

### 2) 특수분류지수

- 특수분류지수는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자본재, 중간재 및 소비재로 구분한 재별분류지수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한 공업구조별지수
- 지수품목중 기계설비품목 117개만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추이를 보기 위한 설비용기계류지수 등으로 분류

#### 4.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 가. 지수의 성격 및 연혁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제품의 수급 동태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 한국산업은행이 처음으로 1968년부터 1966년을 비교 및 가중치의 기준연도로 라스파이레스산식 방법에 따라 출하지수를 편제
- 1970년 7월부터 산업생산지수 편제업무와 함께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편제업무도 통계청(구: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

나. 기준연도, 범위, 분류, 산식, 지수접속은 산업생산지수와 동일

다. 대표계열 선정기준 및 대표계열수는 산업생산지수와 동일

##### 라. 기준물량

- 1995년 월별 출하량을 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월별출하량은 생산량과 같이 광공업동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 마. 가중치

- 가중치 체계는 생산지수와 동일
- 가중치 산정은 1995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의 산업 및 품목별 출하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 바. 지수의 분류

생산지수와 동일하나 다만 출하내역별(내수, 수출)지수 추가

#### 5.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 가. 지수의 성격 및 연혁

-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는 제조업자가 직접생산하여 생산업체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표
-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반제품, 재공품과 유통업자의 재고품은 제외

- ④ 수송 장비 : 산업용 수송기계장비(선박, 자동차, 트레일러 등)
- ⑤ 농업 용 : 농업용 기계장비
- ⑥ 건설 용 : 토목, 건축공사용 기계장비
- ⑦ 사무 용 : 사무용기계, 장비 및 비품
- ⑧ 기 타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본재

## 2) 중간재

- 광공업 및 타산업의 원재료, 연료, 부품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 ① 제조업 용 : 제조업 생산공정에 원재료, 부품, 연료, 용기, 소모품, 공구 등으로서 투입되는 제품
- ② 건설 용 : 건축·토목공사용 자재 및 건축물의 부속내장품
- ③ 연 료 : 운수장비의 산업용 연료
- ④ 기 타 : 용기 및 포장재등 달리분류되지 않는 중간재

## 3) 소비재

- 주로 개인용,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여기에 분류되나, 개인용, 가정용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집기나 비품

### ① 내구소비재

- 집기, 비품 중에서 주로 1년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시마다 부패, 분량이 감소하거나, 파손, 변질, 변형등이 일반적으로 많은 제품은 비내구소비재로 분류
- 의복류 및 신발제품 등 개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금액의 다소 또는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비내구소비재로 분류

### ② 비내구소비재(단용재)

- 주로 수회 사용으로 소진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

- ④ 재별분류지수 편제를 위한 가중치 구조는 공업구조별 지수에서의 마찬가지로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

#### 다. 설비용 기계류지수

- 기업의 설비투자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인 28, 29, 30, 31, 33, 34, 35분류를 구성하는 품목중 기계 및 설비류에 해당하는 117개 품목만의 동향을 지수화한 것

#### 라. 재고율지수

- 재고율지수란 계절조정된 월말(또는 연말)재고지수와 월중(또는 연중평균)출하지수와의 비율을 말함
- 재고율지수는 기준년도의 수급상황을 100으로 전제하고 작성되는 것임
- 따라서 재고율지수는 비교시점의 재고와 출하의 비율이 기준년도보다 높은가 낮은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재고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부 록

1. 광공업동태 조사표 양식
2. 사업체관리 보고 양식



**< 작성 시 유의 사항 >**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신규품목을 새로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통계청 조사직원에게 알려 지정품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체의 이전, 휴·폐업, 증설 등 조직·경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짧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작성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통계청조사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재합니다)

**< 용 어 해 설 >**

생 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생산 : 사업체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li> <li>○ 위탁생산 :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서 생산</li> <li>○ 수탁생산 : 타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li> </ul>
구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수입, 국내 타업체에서 구입, 동일기업내의 다른공장장에서 입고하거나 빌려온 제품</li> <li>○ 반품된 량 (폐기품 제외)</li> </ul>
동 일 공 장 재 투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 내에서 자가 소비된 제품</li> <li>○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 제공한 제품</li> </ul>
국 내 시 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부대로 출고된 제품</li> <li>○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수출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제품</li> <li>○ 종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된 제품</li> </ul>
수 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으로 직접수출하였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li> <li>○ 주한미군에게 납품한 것도 수출로 봄에 유의</li> </ul>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고된 제품</li> <li>○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 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고된 제품</li> <li>○ 타사업체로부터 빌려온 제품을 변제하기 위해 출고된 제품</li> <li>○ 선물, 견본, 전시용 등으로 출고된 제품</li> </ul>
일 말 재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으로 이루어진 실제 재고</li> <li>○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은 포함</li> </ul>

**< 주요 증 감 사 유 예 시 >**

- ▲ 증감사유(예)  
 설비증설(보수,고장,축소), 수출증가(감소), 내수증가(감소), 타공장흡수, 수요증가 대비, 지정품목생산개시, 신제품·신기법 도입, 타품목생산, 원재료구입부진, 휴업, 화재, 파업, 일기불순 등
- ▲기업요령(예)  
 수출 : ○○국과의 수출계약체결, 경쟁국의 설비보수  
 내수 : ○○로 인한 기수요, 할부판매 실시 등

**< 주 요 증 감 사 유 >**

본항목은 업종분석에 진요하게 사용되오니 전월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공업동태조사표(Ⅱ)

승인번호 제 10111 호

(199□년 □□월□)

1.당월확정 2.당월잠정 3.전월확정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번호	사업체명
행정 구역 번호	조사구 번호	소재지

**작성기관 : 통계청**  
 귀사업체는 통계법 제 12조에 의거 통계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 13, 14조에 의해 통계국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① 제품생산·출하·재고**

일련번호	1	2	3	4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 품목변동부호				
생산	자재생산 (1)	수량	금액	
	위탁 (2)	수량	금액	
	수탁 (3)	수량	금액	
	광등생산총계 (1+2)	수량	금액	
	능력생산총계 (1+3)	수량	금액	
	구입(외부동일기업내외공장)			
출하	동일공장내재투입(자가소비)			
	국내 수량			
	시간 금액(백만원)			
	수출 수량			
	수출 금액(백만원)			
동일기업내타공장출하및타				
재고	월말 수량			
	금액(백만원)			

**② 원재료 및 연료시용·재고**

일련번호	※ 품목번호	원재료 및 연료명	※ 변동	단위	월중 시용량										월말 재고량						
					구분 1수입	구분 2수입	전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1																					
2																					
3																					
4																					
5																					
6																					
7																					
52	902	경유중유		kℓ																	
53	903	빙기C유		kℓ																	
54	904	전 령		천(kwh)																	

**③ 고용 및 조업상황**

생산지	명	월중	인원	직자	명	월중	이직자	명	자	업	종	사	자	수	월	중	조	업	일	수	명	시간	교	대
증감 사유		중	사	자		조	업	일	수	명	시간													

응답부서 :



응답자명

조사담당자

(인)

**< 작 성 시 유 의 사 항 >**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부분의 경기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신규품목을 새로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통계청 조사직원에게 알려 지정품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체의 이전, 휴·폐업, 증설 등 조직·경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짧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작성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통계청조사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재합니다)

**< 용 어 해 설 >**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생산 : 사업체의 설비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li> <li>○ 위탁생산 :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업체에서 생산</li> <li>○ 수탁생산 : 타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li> </ul>
구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수입, 국내 타업체에서 구입, 동일기업내의 다른공장에서 입고하거나 빌려온 제품</li> <li>○ 반품된 량 (폐기품 제외)</li> </ul>
동 일 공 장 재 투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 부품, 연료 등으로 공장 내에서 자가 소비된 제품</li> <li>○ 위탁생산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재료로 제공한 제품</li> </ul>
국 내 시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타 사업체 또는 소비자 및 군부대로 출고된 제품</li> <li>○ 수출용이라도 타사업체로 출고되어 다른 수출제품의 부품으로 출고된 제품</li> <li>○ 중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된 제품</li> </ul>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으로 직접수출하였거나 다른 수출업자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li> <li>○ 주한미군에게 납품한 것도 수출로 봄에 유의</li> </ul>
동 일 기 업 내 타 공 장 출 하 및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조사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으로 출고된 제품</li> <li>○ 동일기업내 타공장의 원재료, 연료 등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출고된 제품</li> <li>○ 타사업체로부터 빌려온 제품을 변재하기 위해 출고된 제품</li> <li>○ 선물, 견본, 전사용 등으로 출고된 제품</li> </ul>
월 말 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생산, 위탁생산, 구입분으로 이루어진 실제 재고</li> <li>○ 판매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은 포함</li> </ul>

**< 주 요 증 감 사 유 예 시 >**

**< 주 요 증 감 사 유 >**

- ▲ 증감사유(예)  
 설비증설(보수,교장,축소), 수출증가(감소), 내수증가(감소), 타공장합수, 수요증가 대비, 지정품목생산개시, 신제품·신기법 도입, 타품목생산, 원재료구입부진, 휴업, 화재, 파업, 일기불순 등
- ▲기입요령(예)  
 수출 : ○○국과의 수출계약체결, 경쟁국의 설비보수  
 내수 : ○○로 인한 기수요, 할부판매 실시 등

본항목은 업종분석에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전월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시 유 의 사 항 >**

- ① 이 조사는 국내의 광업, 제조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신규품목을 새로 생산하는 경우 반드시 통계청 조사직원에게 알려 지정품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체의 이전, 휴·폐업, 증설 등 조직·경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짧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작성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통계청조사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표시는 통계청에서 기재합니다)

**< 용 어 해 설 >**

**당월수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주문받은량

**당월진척량**

○ 사업체에서 건조 또는 제작 중인 선박, 철도차량의 공정진척률에 따른 환산량  
(수량 × 당월진척률)

**수주잔량**

○ 총 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차감한 잔량

**당월완성품인도량**

○ 공정진척도에 관계없이 선박 또는 철도차량을 완성하여 통관 또는 주문처에 납품한 량

**< 주 요 증 감 사 유 예 시 >**

- ▲ 증감사유(예)  
설비증설(보수,고장,축소), 수출증가(감소), 내수증가(감소), 타공정흡수, 수요증가 대비, 지정품목생산개시, 신제품·신기법 도입, 타품목생산, 원재료구입부진, 휴업, 화재, 파업, 일기불순 등
- ▲기입요령(예)  
수출 : ○○국 주문물량 인도시기 도래, 파업으로 인한 조업차질 등  
내수 : 신공법의 도입, 부품납품지연 등

**< 주 요 증 감 사 유 >**

본항목은 업종분석에 진요하게 사용되오니 전월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누락)사업체 관리사항 보고

【 사업체사항 입력 화면 】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
행정 구역 번호										소재지 :
업체 종사자 :	명									
기업 종사자 :	명									
기업구분 :	1. 대기업 2. 중소기업									
응답부서 1 :	응답자 :									
										전화번호 :
응답부서 2 :	응답자 :									
										전화번호 :
산업분류										
조사표 종류 :	1. 동태 I 2. 동태 II 3. 동태 III 4. 생산능력 5. 기계수주									
작성 구분 :	1. 당해사업체 2. 주공장 3. 본사사무실									
입력 구분 :	1. 사무소 2. 사업체									
창설 연월 :										
변동부호 및 연월										전출지 : ( )
조사구번호										현담당자 :
현담당시점 :										
비고 :										

【 생산품목 입력 화면 】									
품목번호	품목명	구분	최초생산	품목변동	비고				

※ 품목번호 기입시 동태품목번호는 5자리  
 생산능력품목은 5자리 품목번호 앞에 『W』를 표시하여 6자리  
 ※ 구분에서 표본품목일 경우 산업동향과의 협의 후 기입

**【 생산공정사항 입력 화면 】**

품목번호 :	
품 목 명 :	
공 정 1	
공 정 2	
공 정 3	
공 정 4	
공 정 5	
공 정 6	
공 정 7	
공 정 8	

※ 품목이 2개이상일 경우 주요 품목 1개만 기입

**【 동일기업 타공장에 관한 사항 】**

사업체 번호 :	사업체명 :		
행정구역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조사 여부 : 1. 단독조사 2. 합산조사 3. 본사조사 4. 비동태조사사업체			
품목번호	품 목 명	품목번호	품 목 명

**【 기타 참고사항 】**

1. 광 공 업 동태조사	
2. 생산능력	
3. 기 타	

